특 집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 편집자 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
이숙현 (lsh1020@nl.go.kr)

1963년 최초 제정된 도서관법은 4차의 개정절차 후 오늘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란 명칭으로 국내 도서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다. 최초의 도서관법이 도서관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안정된 제도를 제공하였다면 그 후의 개정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속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도서관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금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발표된 개정안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법률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일개 관종으로 구분하고 제2장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규정한 후 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IFLA와 세계국립도서관장회(CDNL)에서는 "국가문헌을 법적납본제도에 의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국가서지를 생산하는 기관을 국립도서관"이라 정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적납본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서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립도서관"의 역할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임을 명확히 언급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금번 개정안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추가된 규정은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개발 · 지원"이다. 이는 장애인 및 지식정보소외계층이 국가로부터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자관의 발전은 물론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서관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라는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향후 도서관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경우 지역별, 분야별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서관의 확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규정해 두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국민에 대한 납본제도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가문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우선 현행법에서 "제출"이라는 용어를 "납본"으로 수정하여 납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 및 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매체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대상을 신속하게 확장하여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에 따라 납본 부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국가문헌이 효율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관련기관이나 전문기관, 혹은 단체 및 유통업계에서 납본을 대행할 경우 납본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본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국가문헌이 완전하게 납본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국가문헌을 완전하게 수집하여 이를 국가서지로 생산하고 수집된 국가문헌을 영구히 보존하여 문화전적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금번 도서관법 개정시안에서는 출판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인의 역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근거 제공, 그리고 지체장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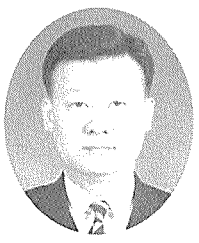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법률담당 연구관
홍완식 (bismarck@nanet.go.kr)

1. 머리말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

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입법부에 소속된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도서관은 '법원조직법', 행정부에 소속된 국립중앙도서관 등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각각 설립 ·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 개정시안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지면관계상 검토의 범위는 국회도서관과 관련된 조항으로만 한정한다.

2.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1) 개정시안의 논의 경과

문화관광부는 2003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도 법률안제출계획'을 통하여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2003년 4월 4일에 개최된 2003년도 제1차 국가도서관 정책자문회의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시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5월 6일에 개최된 2004년도의 제1차 국가도서관 정책자문회의에는 1년 전에 제출된 개정시안과는 다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전면개정안'('도서관법개정시안'과 동일한 내용)이 제출되었다.

2) '도서관법개정시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① 현행법 제2장의 명칭인 '국립중앙도서관'을 개정시안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법안 제2장의 명칭)"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 :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제2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도서관을 「대표도서관」과 「비대표도서관」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분법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다른 도서관들의 각 전문분야와 지역에서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외국의 예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시안이 국제적 감각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 도서관관련 법률이나 실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혀 없다. '국립'이라는 표현은 설립 · 운영의 주체가 국가임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대표'라는 표현은 대표성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의 명칭에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의(語義)와 용법(用法)에 맞지 않고, 누가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수임을 했는가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② 국가대표도서관을 "국내자료의 망라적 납본, 국가서지의 작성 및 배포, 각급 도서관의 지도 ·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 규정(개정시안 제2조 제4항)하고, "국가서지 등 각종서지의 작성"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명문화(개정시안 제17조 제1항 제3호)하려는

법안규정에 대한 의견 :

중요한 국가서지의 작성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회도서관이 수행해 오고 있다. 즉, 국회도서관은 1960년 이후에 발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1945년 이후에 발간된 학위논문에 대한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 등의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국가서지의 작성'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국가서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의 개정시안 규정은 현재의 국가서지 작성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권한을 존중하는 바탕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더 나아가 국회도서관의 국가서지 작성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각종 서지의 작성…"을 개정시안 제16조 제1항에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현행법률 제16조 제2항)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견 :

국내 및 국외 도서관간의 협력과 정보교류가 날로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도서관체계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 오히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속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양대 기둥으로서,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문화분야에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상의 협력규정은 유지되거나 또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 권력이나 중앙집권을 지향하던 시절과는 달리 권력의 분산이 강조되고 지방자치가 중시되는 오늘날에, 동 개정시안이 함의하는 도서관기능의 중앙집중화는 문화적 지방분권화 경향에 반하는 시도라고 오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성과 지역성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체계개선의 세계적 경향을 무시하고 개정시안 제2장의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내 전체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집중 · 통합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동 개정시안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서지 작성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개정시안의 내용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유지되거나 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소속된 국회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이를 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의 기능과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여러 도서관과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을 밝힌다.

법원도서관 열람과장
배의철

정보통신의 혁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도서관 또한 이러한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법을 수립하여 이용자인 국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도서관법 개정 작업은 21세기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정비의 출발로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법률전문도서관인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법원 내부의 재판업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 공공도서관 성격을 가미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이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법률문화정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손용근 관장(고등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법원도서관 전 직원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서관법개정시안'을 보고서 느낀 몇 가지를 적고자 한다.

우선 잘 개정된 부분부터 말하자면, 첫째 "제5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이는 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제17조 업무 제2항 연구소" 규정은 도서관의 참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규정은 도서관이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장으로 정보이용자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흡한 점을 들자면, 첫째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규정에서 도서관과 출판업계의 보완적인 발전방향 및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를 위한 언급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 "제15조 도서관협회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전문도서관의 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도서관협의회가 도서관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6장 전문도서관 제35조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도서관의 자료공유를 위한 표준화와 관련한 언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제18조 자료의 납본"과 관련하여 법원도서관을 납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법원도서관에 법률에 관련된 도서 납본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둘째 "국가대표도서관장의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도서관대회(2006년)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대표도서관장의 격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 가자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도서관의 소속을 정비하였으면 한다.

사서들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도 이용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것들이 모여 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리라 믿는다. 이 시대의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명심하고, "인류문화의 꽃은 도서관에서 핀다"는 자긍심으로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도서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
충남 금산도서관장
김익중 (ikjung@dreamwiz.com)

일반적으로 법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나 제도의 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이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미래 지향점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법개정시안'의 관장 사서직 보임조항의 지속이나 진흥시책수립의 새로운 도입은 안정성 확보와 미래지향점 제시에서 시의 적절한 면이 있다.

*지속적인 진흥시책도입과 도서관 위상강화는 잘한 일

먼저 법의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하여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법(교통안전법등)에서처럼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과 이를 심의하고 제안하는 정보정책위원회를 둔 것은 작금의 변화가 많은 사회 현상에 따른 적절한 것이라 본다.

*학교도서관의 적절한 활용과 사서협회 육성도 고려해볼 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전국 학교도서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학교 수업의 활용은 물론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까지 기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공도서관 일부 기능(단순한 학습장소)을 맡아 주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 1항의 말미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문직종들은 거의 모두 협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조산사 등은 의료법에, 세무사,건축사, 법무사 등도 각각의 개별법령에 법인 조직을 갖고 자질향상과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업무연구 등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제 사서들도 법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15조에 사서협회를 넣어 "도서관협회 또는 사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지자체에서의 교육청 소속도서관 운영비일부 부담은 계속되어야

현행법 제2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소속도서관의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문구 때문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에 비하여 십수배가 많은 일반회계(교육청은 특별회계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조항은 현행대로 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문구만 삭제하면 될 것이다.

현행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개정시안처럼 개정할 경우 더더욱 지자체의 교육청 도서관지원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정의는 제2조 6항에 다음과 같이 하면 더 명료할 것이다.

"평생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이나 공공의"로. 왜냐하면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몇가지

최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이 관장보임과 관련, 도서관법의 저촉을 피하려고 명칭을 변경하고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범위 확충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제3조 적용범위에 교육부도서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할 것이고, 제9조 제1항의 "평생학습사" 는 평생교육법상의 자격 명칭인 "평생교육사"로 고쳐야 한다.

제17조 2항"제1항9"는 "제1항9호"로 하여야 하고, 제30조 "교육기관의"는 "교육기관"으로 제33조 "당해 학교의"는 "당해 학교"로 함이 적절하고 제37조"다음의 중요사항을"은 "다음의"를 삭제하여 "중요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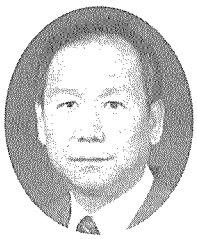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사회과학정보팀장
백항기 (hkpaik@sookmyung.ac.kr)

2004년 5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계도 이를 근거로 새로운 도약의 장을 맞게 되었다. 이에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서관계도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도서관법의 바람직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 바람직한 부분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발전시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서비스진흥기금' 등
○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규정
○ 도서관서비스 행정의 지방분권
○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 이용자 정보보호

□ 미진한 부분

○ 도서관간 협력 체제(컨소시엄)
○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사서 자격 제도 개선
  - 재교육 및 계속교육 체계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구현을 위한 시책 수립
  - 서지정보 위주의 기존 도서관시스템에 대학조직 내에서 생산되어 분산되어 있는 문서, 그래픽, 동화상 등의 정보 · 지식을 저장,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의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지식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학내 정보 · 지식의 납본 제도화
    • 교수 및 대학원생이 생산하는 비공식문헌의 원활한 수집 도모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응책 확보
    • 아카이브(archive) 기능 강화
    • 각종 연구비 수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이용권 확보
  -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이용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보완
○ 부속기관으로부터의 탈피하여 대학본부 기관으로의 조직구조 개편
  -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속시설에서 교육 기본시설로의 전환' 시책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하여
  -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동태적이고 다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 학생과 교수의 교육 및 연구지원 기능 강화
    • 고도의 전문적인 정보 · 지식 활용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센터 기능 강화
    •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비형식적 교육기능 강화
○ 인적 자원
  - 전문성 등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교수순환보직 관장제도의 보완
    • 사서직의 전문직군화
    • 사서자격의 재 인증제도 도입
    •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업무 구분
    • 사서자격증에 따른 업무 구분 및 상응 대우
    • 사서 재교육 및 계속교육 기회 확대
    •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 승진체제의 불균형 시정
    • 국 · 공립대학 : 임용기관별, 동일 행정직군 내에서의 차별
    • 사립대학 : 학교법인정관(준칙)별, 동일 행정직군 내에서의 차별

- 직원배치 기준

○ 자료구성 및 장서 기준
-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 및 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한 필요사항
- 자료유형별 장서 기준
- 학과별 또는 전공별, 주제별 장서 기준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기준 완화

○ 시설 기준
- 공간 요소별 시설 기준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 기준

○ 예산 기준
- 예산배정 기준
- 자료유형별 예산집행 기준

○ 대 이용자서비스의 확장
- 대학도서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 개방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경비 지원

○ '도서관정보서비스진흥기금' 에 의한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
- 도서관간 협력 체제(컨소시엄)를 유도하기 위하여
- 국가차원의 망라적인 정보자원 수집
- 도서관간 중복투자 방지

○ 대학도서관 평가체제 확립 및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평가기준 확보
-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재정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도서관평가사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의 도서관 부문 평가의 일원화
- 평가지표에 투입요소, 과정요소 및 산출요소를 포함시켜 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기 타

다음의 내용을 질문형태로 반문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제5조(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감독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또한 ①의 "…5년마다"는 왜 꼭 5년이라고 못 박고 있는지? 시대의 조류는 늘 새롭게 급변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적절한지? 가능하다면 "3년 이상의(중·장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 제18조(자료의 납본) ① ②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단체, 그 이외의 자가 제2조 제2항의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즉 제29조와 제32조에 대하여 대학도서관도 학교도서관업무중 제32조 4호의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의 부분도 포함되어 명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제32조의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지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바꾸면 어떠한지?

○ 제54조의 과태료부분에서 "규정을 위반한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의 규정에 대하여 과태료의 유형은 질서 벌, 징계 벌, 집행 벌로서의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집행 벌로서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보아지는데, 납본 태만인 경우 왜 해당 자료 정가의 10배를 부과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당위성과 객관적인 근거는 있는 것인지?

○ '도서관정보서비스진흥기금'이 생기면 이전에 대학을 지원하였던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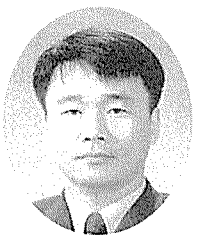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영신고등학교 사서교사
송기호 (giho7@dreamwiz.com)

단위 학교도서관에서 그 동안 도서관 관련법과 관련해서 적용받았거나, 적용한 법조문은 자료의 제적과 폐기에 대한 조항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을 제정 · 집행하고 적용받는 주체간의 이질성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각 운영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서관 관련법과 연관 짓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도 한 몫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자료, 예산 등 중요한 운영 요소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교육관련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이 도서관 관련법에 기댈 언덕을 잃고 지내온 것도 사실이다.

새로 마련될 도서관법이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관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에 마련될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이 학교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 요소 하나하나에 적용되고,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국가 수준의 도서관 정책의 틀 속에서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한국도서관기준

에서 정한 학교도서관의 시설, 설비, 직원, 예산 등의 기준이 도서관법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시안	검토의견	수정 의견
제2조(정의) ③ 도서관 서비스라함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이용지도교육 등…	• 서비스는 시설과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원(사서)의 지적 · 정의적 역량이 중요함. • 서비스를 하는 주체를 사람(사서)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도서관은 관종별 또는 설립주체별로 주된 봉사 대상이 다른데도 막연하게 모든 국민으로 표현함.	③ 도서관 서비스라함은 도서관 직원이 시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이용교육 등…
제6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한다.	• 제2조(정의)에서 명시한 도서관의 종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경우 제2조의 정의에서 학교도서관이 포함되었다하더라도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임. • 봉사대상이나 성격에 의해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봄.	도서관은 봉사대상에 따라… 또는 도서관은 그 설립자와 봉사대상에 따라…
제9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은…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 사서교사의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 따라서 ①항이나 ②항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은… 사서교사(1급, 2급) 및 실기교사…
제32조(업무) …교수, 학습활동… ① …축적 및 이용 ② …관리 및 이용 ③ …제작 및 이용 ④ …구축 및 이용 ⑤ 도서관 이용의 지도… 정보활용의 교육	• 및 을 전후해서 축적 등의 행위 주체가 도서관과 이용자로 서로 다름. • 이용이라는 표현대로 하면 축적과 이용 모두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모순에 빠짐.	• …자료의 …축적 및 이용에 제공 (또는 봉사) • ⑤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활용 교육
제53조(권한의 위임 ·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	•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시 · 도 교육감이 누락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시 · 도지사 및 시 · 도교육감에게…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장
김석영 (sykim@kisti.re.kr)

'도서관법개정시안'의 기본 방향은 자율성 강화, 정보격차 해소, 지방의 역할 강화, 서비스의 현대화, 전문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에 관련된다.

그러나 특히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관종은 전문도서관일

것이다. 개정안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전문도서관이란 그 설립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도서관은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특정 분야의 지식정보가 다양화, 세분화, 심층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서비스란 서비스 영역의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 중 전문도서관 관련 내용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동 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주제전문사서 자격증 신설을 건의한다.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 및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주제분야별 전문사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개정시안에 언급된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정시안 제2조 공공도서관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병원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병원도서관은 기존에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된 병원 부속 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밀히 구분하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병원도서관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편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병원도서관은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도서관이 모두 필요하다면 전자의 명칭은 환자도서관이 더 적합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병원도서관과 환자도서관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특수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
육근해 (youk@kbll.or.kr)

지난 6월 발표한 '도서관법개정시안' 내용 중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은 특수도서관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용을 보면 우선 "특수도서관"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특수도서관이 장애인과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군사시설 및 교도소에 복무 · 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서관이라 하고 규정해오던 것을 점자도서관,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한 것이다. "특수도서관"의 정의가 오늘날 의미하는 특수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정부나 학계, 도서관계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다지지 못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도서관"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걱정 반, 기대 반이다.

도서관 자료에 있어서는 인쇄자료 등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삽입하였다.

특별히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라 규정하고 "도서관의 책무"로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구하라'고 규정했다. "지식정보격차해소의 지원"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강구하라' 하였다.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의 설립 운영"을 통해 장애인서비스의 국가시책 수립과 총괄, 기준 및 지침 제정, 콘텐츠의 개발 배포,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를 책임질 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은 21세기 지식기반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모든 국민을 잘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간에만 맡겨 두었던 장애인서비스도 국립장애인서비스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병원 · 병영 · 교도소도서관을 정의한 것과 함께 "병원 · 병영 · 교도소도서관은 수용, 입원, 근무 · 복무중인 자를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병원 · 병영 · 교도소도서관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도서관법은 단순히 도서관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새로 개정되는 도서관법에서 지식소외계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확충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서 자격에 있어서도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병원 · 병영 · 교도소도서관과 같은 특수도서관 사서와 기타 도서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에게는 평생학습사, 사서교사 등과 같은 특수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봉사대상자에 대한 학식을 갖춘 전문사서의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시행령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규정한 "한국도서관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2년 주기로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 학생을 위한 도서관, 연구원을 위한 도서관 등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도서관은 없다. 더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지식정보소외계층에게 있어 도서관은 어머니와 같다.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와 같다. 도서관법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 개정되는 도서관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고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이용남 (lyn0802@hansung.ac.kr)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도서관발

전위원회' 란 이름으로 법제화된 후, 1991년 문화부 이관 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로 존재하다가 2000년에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2002년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거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번 '도서관법개정시안' 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다시 법제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하는 일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관련된 이번 개정시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과거 법의 내용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아직도 중요부분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바람직하게 개선된 내용

① 위원회의 법제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제7장으로 독립시켜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8개 조항에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은 과거보다 훨씬 체계가 잡혀있다고 본다.

② 위원회의 기능 : 우리나라 위원회에는 통상 행정관청인 위원회(행정위원회)와 행정관청이 아닌 위원회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는 다시 의결위원회, 심의 · 조정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나뉘고 있다. 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 기능에서 '심의 · 조정' 기능으로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행정학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제37조와 제39조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로 명시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③ 위원회의 역할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주요정책의 심의 · 자문 · 제안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의 정책 조정과 정책추진결과의 분석 ·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일이라 믿는다. 그런데 제39조 5항과 8항에서 정책의 조정과 평가임무를 명시하였음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④ 사무보조 기구 :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사무보조 기구가 절대 필요하고 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43조에서 이를 명시한 점은 과거 법에서는 볼 수 없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2. 미진한 내용

① 위원회의 위상 : 이번 개정시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위원회가 과거 법과 마찬가지로 주무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정책은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 행정자치부 · 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 동등한 행정부처간의 행정적 협조만으로 정책현안을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오랜 기간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NCLIS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바, 우리는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서라도 그 위상을 강화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②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기 위하여서는 전체 회의보다 전문분야 별로 소위원회나 연구팀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시안 제39조 2항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조항을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42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주무부장관)이 이를 소집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바, 위원회 회의 연간 소집 회수, 위원들의 요청에 의한 소집절차 등을 시행령에서라도 명시하여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진흥위원회 위원장
경기대학교 교수
한윤옥 (yohan@kyonggi.ac.kr)

196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도서관법' 이 1987년에 전면 개정이 되었다가 1991년에 '도서관진흥법' 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제정되었고, 1994년에 다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 을 불과 3년만에 다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명칭을 바꾸어 제정하게 된 것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민독서진흥법안을 도서관진흥법과 별개의 법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관계에서는 별도의 독서진흥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진흥법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국민독서진흥법안을 절충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제정한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진흥법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더불어 문고와 독서진흥에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여 추가함으로써 문고활동을 도서관 활동에 포함시키고, 도서관진흥과 국민독서진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법적으로 하게끔 강제되었다.

사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에서처럼 서로 다른 두가지 독립된 영역을 하나의 법안에 통합하여 제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두 영역은 각자 독립성이 분명하면서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의 경우 도서관 분야와 독서진흥 분야는 서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상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분야를 함께 묶어서 법 명칭에서 제시한 것은 두 영역이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도서관을 둘러

싼 사회 상황들이 이러한 법 명칭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따라서 독서진흥을 도서관의 활동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다면 이번 시안에서는 도서관을 규정하는 법으로 그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진흥을 별도의 독립된 내용으로 볼 경우 독서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내용을 기존의 법에서 분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각각의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독서진흥을 도서관의 기본적인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에서 구태여 독서진흥 관련규정과 도서관 관련규정을 함께 묶을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서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이 도서관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시안에서 독서진흥을 법률의 명칭에서 제외시키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제2장 제17조 8항)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임무에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제7장 제39조 3항)을 포함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명칭은 명칭대로 도서관을 규정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국가 대표도서관과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정책위원회 임무에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및 실시가 명시됨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서관 활동에 독서진흥이 개입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제3장 제21조 3항)를,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제5장 제32조 5항)을 맡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관종별 업무를 통한 국민 독서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였다.

이번 시안대로 된다면 법률명칭에서 독서진흥이 사라지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사회 안에서의 도서관 발전이라는 관계를 잘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독서진흥을 포함한 국가적 도서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LA